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 12. 4. 선고 2015고정 1006 판결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유포),모욕

대 전 지 방 법 원 천 안 지 원

판 결

사건 2015고정1006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모욕

피고인 A

검사 정선희(기소), 임수민(공판)

판결선고 2015. 12. 4.

주 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죄사실

1.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유포)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6. 11. 22:40 천안시 동남구 B 자신의 주거지에서, C대학교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 'D' 게시판에 접속하여 "강간당할 때 기분 어 떰???"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을 작성하고, 그 밑에 "하악하악 제가 예전에 강간 당해본적 있어서 잘아는대여 흐흐남자애가 제입 막고서 저 거시기를 제구 멍에다가 막 쑤셔넣더라고요 처음엔 기분나빠서 하지말라고 했는데 막상 제구멍어 걔 고추가 들어 오니까 생각보다 느낌 좋더라고요키 그래서 처음엔 저도 하지말라고 저항하다가 나 중엔 저도 같이 즐겼어요 켜 막더 세게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덕분에 처 녀막은 잃었지만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키키 그이후로 제가 좀 발정이 나서 그런지 저 따먹으려는 남자들이 많이 꼬이더라고요 따먹으려고 들이대는거긴 하지만 인 기 많아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보여서 기분 좋았어요 능능" "저 고등학교 때 성폭행 당한적있는데여!!! 제가,

인기가 좀 많아서(싸보여서) 주변에 남자가 많았거든요!!(따먹어보려는 얘들만)체육관에 서 체육수업끝나고 남자애들 세명이랑 뒷정리하는데 걔네가 갑자기 저한테 오더라구 여!! 그때 체육관에 저희밖에 없었지만 친구니까 안심하고 있었는데 두명이 제팔을 잡고 눕히더니 한명이 제위에 올라타서 옷을 벗기더라구요!! 반항하려고 해봤지만 남자애 들 두명이 제팔을 잡고 있는데다가 손으로 제입도 막고 있어서 아무것도 못했어여 그상태로 다른 한명이 제윗옷을 벗기고 가슴을 만지더라고요TT 옆에있는 남자애들 두명은 혓바닥으로 제 얼굴이랑 목이랑 가슴 핥아대고... 처녀막 뚫려서 피가 흘러넘 치는데 닦지도 못하고 진짜 슬펐어여 그렇게 한명씩 돌아가면서 저를 강간하는데 너 무 수치스러웠어여 나중에 복수할려고 신고할까도 생각했지만 걸레라고 소문날 까봐 어디가서 말도 못하겠고.... T"라는 음란한 내용의 댓글을 작성하는 방법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음란한 문언을 공공연하게 전시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피해자 E로부터 교제를 거절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인터넷에 유명 연예인과 피해자 사진을 비교하는 글을 올린 다음 자신이 이를 비방하는 댓글을 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피해자의 외모를 비하하는 댓글을 유도하여 피해자에게 고통을 주기로 마음먹고, 2015. 6. 16.경 위 주거지에서 위 'D' 게시판에 접속하여, "위에가 F 언니 고요, 밑에는 새로 데뷔할 예정인 신인 걸그룹 맴버인데요...누가 더 매력적인지 평가 좀 해주세요"라면서 함께 미리 싸이월드를 통하여 구해 둔 피해자의 얼굴 사진과 유명 연예인(F)사진을함께 첨부하여 게시글을 작성한 후, 위 게시글에 자신이 "개새꺅→ 크다 이 새끼 계속해서 지사진 올리면서성형 견적 물어보더니 이번엔 F랑 비교하냐 시발 어디 걸레를 여신한테 갖다대 시발새꺄"라는 내용으로 욕설이 포함된 댓글을 작성하여 피해자를 모욕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6회에 걸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 1. 피고인의 법정진술
- 1.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 1. 각 고소장, 각 증거게시글
- 1. 고발장, 인터넷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2호, 제44조의7제1항 제1호(음란한 문 언 전시의 점), 형법 제311조(모욕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임현태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